

**【별표 3】 전문가 등급 기준**

전문가 등급	자격 요건
수석고문	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
특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장·차관의 직위에 있던 자</li> <li>2. 대학교 총장</li> <li>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</li> <li>4. 제1호 내지 제3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
1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</li> <li>2. 4년제 대학 정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4. 해당 분야 20년 이상 경력자*</li> <li>5. 제1호 내지 제4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
2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3·4급 공무원</li> <li>2. 4년제 대학 부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</li> <li>4. 해당 분야 15년 이상 경력자*</li> <li>5. 제1호 내지 제4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
3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5급 공무원</li> <li>2. 4년제 대학 조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3.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차장급</li> <li>4.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*</li> <li>5. 제1호 내지 제4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
4급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4년제 대학 조교수로 2년 이상 경력자</li> <li>2.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*</li> <li>3. 제1호 내지 제2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
5급	1~4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